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57
----------	------

2025년 4월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03월 31일, 봉양순 의원(찬성자 27명)
- 나.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04월 2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봉양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기준금액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 마련(안 제19조제1항제3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의용소방대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관련해 지급기준이 되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현행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별표 6(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의 지급기준을 적용코자 하는 것임.

[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 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이내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

- 의용소방대¹⁾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58년에 「소방법」 제정으로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1972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2025년 3월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99대(본대 50대, 지역대 119대, 전문대 30대) 4,424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임.([표 2 참조])

[표 2]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2025년 3월 기준)

구 분	내 용																																			
연혁	○ 1954.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 ○ 1958.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 ○ 1972. 12. 20.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 ○ 2008.1월 소방기본법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근거 신설 ○ 2014. 1.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정 공포(7월29일 시행)																																			
조직운영 실적	○ 조직현황 - 서울시 (정원) 의용소방대 199대, 대원 4,980명 (현원) 의용소방대 199대, 4,424명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대수(대)</th><th colspan="4">대원수(명)</th></tr><tr><th>계</th><th>본대</th><th>지역대</th><th>전문대</th><th>계</th><th>본대</th><th>지역대</th><th>전문대</th></tr><tr><td>정원</td><td>199</td><td>50</td><td>119</td><td>30</td><td>4,980</td><td>2,000</td><td>2,380</td><td>600</td></tr><tr><td>현원</td><td>199</td><td>50</td><td>119</td><td>30</td><td>4,424</td><td>1,555</td><td>2,280</td><td>589</td></tr></table> ○ 소방업무보조 실적(‘24년 기준) - 총 2,535회, 연인원 9,806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 ○ 봉사활동 실적(‘24년 기준) - 총 1,316회, 연인원 5,254명 참여하여 취약계층(754회) 지원 및 봉사활동(562회) 전개	구분	대수(대)				대원수(명)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정원	199	50	119	30	4,980	2,000	2,380	600	현원	199	50	119	30	4,424	1,555	2,280	589
구분	대수(대)				대원수(명)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정원	199	50	119	30	4,980	2,000	2,380	600																												
현원	199	50	119	30	4,424	1,555	2,280	589																												
‘25년도 예산	○ 편성구분 : 시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 ○ 예산현황 : 총 33억 39백만원(‘25년)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방호과-3469(2006.03.06.)호)’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제도를 마련해 왔음.
- 이후 2019년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19.12.3)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에 전면 시행²⁾됨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 등 유상교육 대상 고등학교를 제외한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로 인해 고등학생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는 축소된 상태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음.([표 3 참조])

[표 3] 서울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2019년~2024년) (단위 : 천원)

연 도	배정예산	지급금액	지급인원			1인평균 지급액
			합계	대학	고등	
2024년	281,640	210,000	98	97	1	2,142
2023년	281,640	249,000	107	106	1	2,327
2022년	281,640	226,000	101	98	3	2,237
2021년	281,640	254,000	102	101	1	2,490
2020년	112,580	80,351	54	-	54	1,487
2019년	206,052	87,959	58	-	58	1,516

2)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

- 한편, 현행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살펴 보면 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명시된 자녀학비보조수당 상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학생은 그 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정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근거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³⁾도 삭제(2021.1.15.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장학금 지급 기준이 현행 조례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는 자사고와 특목고 등의 유상교육 대상 고등학생에 대해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753(2020.02.14.)호)’⁴⁾이 정하고 있는 수업료 연액을 자체적으로 준용하여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2021. 1. 5., 일부개정 [별표 6] 삭제〉

학 교	지 급 액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 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 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 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 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 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 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4)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753, 2020.02.14.)

□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단위 :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 계
고 등 학 교	분 기 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 이처럼 현행 조례가 장학금 지급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자체적으로 대안의 기준을 준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옴에 따라 행정의 법적 정합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본 조례의 정비가 다소 늦어진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안 제19조제1항제3호)

-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지급 금액을 ‘고등학생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 이내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급 기준의 현행 조례 근거가 폐지되었음에도 장학금은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지금의 행정과 법적 근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라 하겠음.
- 다음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급기준이 현행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 것

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고
유치원 (공립)	년 액	396,000	5,200	
	분기액	99,000		
	월 액	33,000		
고등학교 (공·사립)	년 액	1,450,800	14,100	
	분기액	362,700		
방송통신 고등학교	년 액	135,000	5,300	
	반기액	67,500		

은 현행의 지급 기준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1,877,600원)보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별표] 즉,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1,450,800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이를 보정하면서 일부 상향하려는 것으로,

- 이로 인해 당초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예산 규모는 약 1천만 원 증액(현 2억 8천 → 2억 9천)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대학생 장학금의 연속성과 현실성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표 4 참조])

[표 4] 장학금 지급기준 현행 및 개정안 비교표

구 분	현행	개정안
지급 기준액	고등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1,877,600원)의 <u>150%</u>	고등학생 수업료 연액(1,450,800원)의 <u>200%</u>
기준상한액(고등학생)	<u>1,877,600원</u>	<u>1,450,800원</u>
기준상한액(대학생)	1,877,600원×1.5 = <u>2,816,400원</u>	1,450,800원×2 = <u>2,901,600원</u>

- 한편,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알림(재난대응과-6276(2025.3.17.)호)’⁶⁾에 따라 선발된 지급 대상자(대학생 103명, 고등학생 2명)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반기분 50%가 지급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 잔여분 지급액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6) ‘2025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알림(재난대응과-6276, 2025.3.17.)

- ☐ 지급대상: 105명(대학 103명, 고등 2명)
- ☐ 지급금액: 금139,279,900원(금일억삼천구백이십칠만구천구백원)
- ☐ 기관별 지급인원 현황

본부	총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0	7	3	6	2	6	8	8	7	5	1	2	2	5	0	9	6	4	4	4	2	0	2	1	6	5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봉양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전병주,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기준금액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 마련(안 제19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대조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이내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이내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장학금 지원)제1항 제3호에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19조	의용소방대 운영	3,339,209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281,64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